

산학인재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 2022. 9. 1.)

제2조(사업) 인재원은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0. 7. 1., 2022. 9. 1.)

1. 산학연협력 역량강화
2. 사회수요기반 인력양성
3. 사회맞춤형 산학연협력체제 구축
4. 현장실습 지원
5. 창업교육
6. 일자리고도화
7. 그 밖에 인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

제3조(부서 및 업무) ① 인재원에는 산업기반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및 행정팀을 둔다.(개정 2019. 2. 1., 2020. 7. 1., 2021. 8. 1., 2022. 9. 1.)

② 산업기반교육센터는 지역사회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특화인재 양성과정 운영, 캡스톤디자인, 기업의 R&D과제 수행, 재직자 교육, 맞춤형 기업지원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합 지원하는 기업협업(ICC)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 9. 1.)

③ (삭제 2022. 9. 1.)

④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 9. 1.)

⑤ (삭제 2022. 9. 1.)

⑥ (삭제 2022. 9. 1.)

⑦ 창업교육센터는 창업강좌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 7. 1.)

⑧ 행정팀은 인재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 7. 1., 2021. 8. 1.)

제4조(조직) ① 인재원에는 원장,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행정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8. 1., 2022. 9. 1.)

② 인재원에 교원(산학협력중점, 연구전담, 국책사업 수행, 객원교수), 전임연구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9. 1.)

③ 인재원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면) ① 원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2. 9. 1.)

② 각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2. 9. 1.)

③ 행정팀장은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8. 1.)

④ 교원(산학협력중점, 연구전담, 국책사업 수행, 객원교수), 전임연구원, 행정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9. 1.)

제6조(임무) ① 원장은 인재원을 대표하며 인재원의 운영을 관장한다.

② (삭제 2022. 9. 1.)

③ 각 센터장은 각 부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 9. 1.)

④ 행정팀장은 인재원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1. 8. 1.)

제7조(위원회) ① 인재원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9. 1.)

②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2. 9. 1.)

제3장 사업추진위원회

제8조(설치) 사업 추진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9. 1.)

제9조(구성) ①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1.)

② 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학생처장, 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인재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 9. 1.)

③ 외부위원은 관련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등의 CEO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고 약간 명을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

제10조(회의) ① 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9. 1.)

1.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수립과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고가기자재 도입 심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재원 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12조(설치)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9. 1.)

제13조(구성)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산학협력단장,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1.)

③ 외부위원은 관련 산업체, 연구소, 지자체 등의 전문가로 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산학연공유협업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 2022. 9. 1.)

제14조(회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중 평가지표 대비 사업 진척도에 관한 평가
2. 연차별 핵심성과지표 달성여부에 관한 평가
3. 평가결과의 차년도 사업 반영 계획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인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원장, 산업기반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산학연공유협업센터장, 산학연협력정보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9. 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9. 1.)

1. 인재원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2. 사업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사업 계획(사업비 집행계획 포함)의 수립
5.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학공동프로젝트와 유사 프로젝트 심의, 연구업적 심의
7. 교육과정 개설과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장 산학협력발전위원회 (장 삭제 2021. 8. 1.)

제19조의2 ~ 제19조의5 (삭제 2021. 8. 1.)

제7장 재 정

제20조(예산) 인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금
2.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대학의 대응자금
4. 산업계의 산·학·연·관 협력기금,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5. 협력업체, 협력기관의 대응자금
6. 교육, 연구 수입
7. 사용료, 관리비 수입
8. 그 밖의 수입

제21조(회계) 인재원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다만,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예·결산과 사업계획) 원장은 인재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장 학 금

제23조(장학금) 원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인재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사항) 인재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위 명칭변경)
6.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규정명 변경)
8.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